

安全點檢과 民怨

“民怨”이란 낱말의 뜻을 辭典에서 찾아 보니 “一般國民이 품은 怨望”이라고 풀이되어 있다. 國民이 怨望을 품어서야 안 될 일이므로, 요즈음 社會 各分野에서 民怨을 拔本塞源하자는 運動이 일고 있으니 多幸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상한 事實은, 어쩌다 한 번 程度는 우리 協會가 實施하는 安全點檢이 民怨의 素地를 안고 있다는 式의 말이 우리 귀에 들려 온다는 點이다. 대체 어디서 이러한 말이 생겨난 것일까? 우리는 그 原因을 몇 가지로 分析하여 이에 대한 對策을 세워야 하겠다고 判斷해 본다.

첫째, 많은 사람들이 우리 協會 點檢의 查目的에 대하여 根據 없는 誤解를 하고 있다는 點이 注目할 만하다. 卽 建物 및 施設의 缺陷을 많이 指摘하면 할수록 保險料를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 協會가 이 目的에 供하기 위해 精密點檢을 實施, 過多 指摘을 함으로써 民怨을 誘發한다는 式의 奇想天外的 發想이다.

保險料率과 指摘事項과의 連結이라니, 우리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이 誤解가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으나, 더욱 한심스러운 事實은 우리와의 有關機關內 一部人士 조차도 이런 터무니 없는 空想을 한다는 點이다.

우리는 이러한 根據 없는 誤解를 拂拭시키기 위해 忍耐으로써 努力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 事實 無根이라는 것을 積極적으로 弘報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둘째로 우리 協會의 點檢指摘事項이 關係法規의 領域을 넘어 대우 엄격하고 理想에 만 그친 높은 水準이라는 誤解에 대하여 注目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協會의 現行 點檢基準이 關係法과 어긋나는 데가 없으며 法の 테두리를 벗어난 過多指摘을 한 事實이 없음은 우리 自身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關係當局의 監查時에도 立證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關係法 違反事項 指摘이 곧 民怨이 된다는 論理는 어떤 圖式에서 나온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차라리 點檢을 하지 말라고 못할 바에야, 民怨의 根源을 영동한 데서 찾아서는 困難하며, 이런 種類의 誤解 역시 說得으로써 없앨 수 있도록 各自가 努力하여야 하겠다.

그러나 한편 關係法の 테두리에서만 맴도는 우리의 態度가 發展的인가 하는 面에 대한 省察은 別途의 問題라고 判斷된다.

세째, 安全點檢에 대한 否定的인 感情이 우리 自身の 要因, 卽 서비스 精神의 결여에서 由來된 것이 아닌가 하는 點에 대하여는 깊은 反省이 있어야 하겠다. 建物所有者와의 招請懇談會에서 “官僚의인 點檢態度”가 一部 所有主에 의해 提起되었던 만큼, 이러한 批判에 대해 우리는 謙虛해야만 하겠다. 우리 自身の 결함에 대하여는 다른 누구의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一大反省과 改革이 있어야 할 것이다.